[청구인] 〇〇〇

[피청구인] ○○군수

-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6. 4. 4.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송달용 우편 봉투에 한 날짜 변조 행위를 취소한다.
 - 2. 피청구인이 2016. 6. 8. 청구인에게 한「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급시작, 종료날짜, 생계비, 주거비 지급금액 산정내역 및 지급품 등에 대한 내용(2012. 5. 이후(수용 후) 자(子) 〇〇〇에게 지급한 수급액, 품목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0.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 5. 24. 위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연장을 통보하였고, 2016. 6. 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기각(비공개)한다는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에서 딸과 단둘이 살다가 불행한 사유로 월세방을 제외한 모든 생활품을 잃고 급하게 이불 등을 준비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옆집 주민이 알리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생계를 이었음.

나. 2012. 4. 청구인이 구속수감되고 딸 혼자 남게 되어 ○○군청 ○○과에 서면을 통하여 딸의 생활과 안전을 부탁하였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딸에게 원망의 편지만 오고 궁핍한 생활은 계속 이어졌다고 함. 청구인은 구속 상태에서협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음. 시간이 흐르고 결국 딸은행방이 불분명해지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의 원망만을 남기고 떠났음.

다. 2016. 3. 25. 도착가능 하도록 인천시청·○○군청에 수급증명서 관련 요청의 정보공개 청구를 동시에 하였으며 ○○군청은 인천시청에서 이송을 두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가 진정서를 보내자 공개결정통지서 답변을 보내왔음.

라. 2016. 4. 4. 답변(공개결정문)이나 2016. 4. 22. 편지봉투스탬프로 날짜 변조하였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진정을 하자 사과의 공문을 보냈음. 이후 부분공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왔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위법한 처분 기각을 통보하였음.

마. 공무원이 청구 관련 법규도 인지 못하고 변조·법률위반 등을 함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정당한 수급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결정한 것에 대한 수급비 미지급 등이 의심스러움. 지급내역확인 절차에 의해 알아야 할 것임.

【보충서면】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결정기한 초과 사항은 명백한 위법임. 연장기간 7일 이내의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13일을 적시하였으며 결정 또한 1일 초과 8일이 결정되었음.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분리하여 공개하여 야 하며 미성년의 친부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사유는 적법하지 아니함.

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참고사항의 2012년도 1인 가구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1인 가구) 553,354원이 아닌 453,049원으로 산정하여 피청구인은 잘못 인식하고 있음.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6. 3. 25.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증명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통보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16. 4. 22. 정보공개 촉구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지연 사유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온라인 민원접수로 착각하고 전산처리 통보만하고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정보공개 지연 사과와 함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2016. 4. 22. 발송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우편봉투의 스탬프 날짜를 변조한 것이아님.

다. 청구인은 2016. 5. 2. 청구인이 수감되기 전 본인의 수급비 지급내역과 수 감된 이후 청구인의 딸에게 지급한 수급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 피청구인은 2016. 5. 10. 청구인의 수급내역은 공개하고 청구인의 수감 이후 자녀에게 수급비 지급내역은 본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자녀가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규정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음.

라. 청구인은 2016. 5. 24. 부분공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2016. 5. 30.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한 일정 조정에 따른 정보공개 지연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 보한 것으로 정보공개 기한을 초과한 것은 아님. 2016. 6. 3. 정보공개심의회 개 최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6. 6. 8.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음.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청구인이 2012. 4. 27.자로 교정시설에 입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되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2012. 5.부터 1인 가구 기준 수급비를 적법하게 지급받아 왔음.

【보충서면】

가. 청구인의 2016. 3. 2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6. 4. 4.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2016. 5. 24. 접수된 정보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초 결정기한이 2016. 6. 1.이지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일 일정 조정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여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6. 6. 1. 다음 날인 2016. 6. 2.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를 연장하여 연장결정기한을 2016. 6. 13.로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2016. 6. 8. 하여 연장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참고사항은 2012년도 1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와 상이함.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2012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53,354원이며 1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은 453,049원으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참고사항은 1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에 대한 안내임.

라. 청구인의 자녀는 성년(만20세)이며 청구인이 수감 후 편지를 보내 청구인의 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자에게 1인 가구 수급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음.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9조, 제30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3. 25.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2) 이에 피청구인은 2016. 4.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세대일부 수급 자격 중지(○○○) 및 자격 재책정 통보"공문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정보공개통신망으로 발송하였다.
- 3)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22. 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업무담당자가청구인에게 우편발송이 늦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함께 발송하였다.
- 4)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급시작, 종료날짜, 생계비, 주거비 지급금액 산정내역 및 지급품 등에 대한 내용(2012. 5. 이후(수용 후) 자(子) ○○○에게 지급한 수급액, 품목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5)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0. 청구인에게 자(子) 〇〇〇에게 지급한 수급비지급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6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에는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 5. 24. 위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연장을 통보하였고, 2016. 6. 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비공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제2호 단순・반복적인 청구, 제3호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제2호 이의신청의 대상이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제3호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4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 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 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6항에서는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2호 수급자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 가) 날짜 변조 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4. 4.자 정보공개결정문 또는 공개결정통지서의 봉투에 찍힌 스탬프의 날짜(2016. 4. 22.)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 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처분 또는 부작위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문 또는 공개결정통지서의 봉투 소인 날짜 임의 변경 행위는(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기록상 피청구인이 날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아무런 자료가 없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날짜 변조 행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위법하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심판을 요청하고, 정당한 수급 2인가구를 1인으로 결정하여 수급비를 미지급한 점 등이 의심스러우므로 지급내역확인절차에 의하여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 3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인 2016. 5. 24.부터 7일 이내인 2016. 5. 31.까지 이에

대하여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6. 1.부터 기산하여 7일인 2016. 6. 7.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연장 결정통지서'와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자인 자녀에 대한 수급비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이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한사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7일을 초과하여 2016. 6. 13.까지로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16. 6. 8.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절차의 기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각 규정은 '제3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정보와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에 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되 제3자인 자녀에 대한 지급내역만을 비공개하기로 정당하게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던 것이고 이사건 처분 역시 동일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결정기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연장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날짜 변조 행위 취소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